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86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맹성규 · 박균택 · 이연희  
한민수 · 안태준 · 박홍배  
백혜련 · 복기왕 · 윤준병  
염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증제 시행 이후 여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현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침해, 종사자의 안전 관리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취업 제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배달업 종사 제한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대여)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
-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위승계, 휴업 및 폐업 신고,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등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6, 제17조의7 및 제19조).
- 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  
5).

마. 소화물배송대행인증서비스사업자 및 해당 인증사업자의 종사자에  
게만 적용되던 종사자의 운전자격, 보험 가입 여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교육 이수 의무 등의 규제를 등록업 전환에 따라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종사자에게 적  
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등).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드론」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영업점에”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

것

2.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

은 영업점은 화물의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17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3.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4. 제19조의4에 따른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확인
5.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 확인

6. 제19조의6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17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 등록 신청 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록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및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한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각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같다)을”을 “같다) 및 본인 일치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운전자격을”을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를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제1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중단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전자격”을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자료 제출의무)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2. 제19조의4에 따른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3.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
4. 제19조의6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8(개인정보의 보안조치)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9조의7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원본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조치·열람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인증을 받는 때에”를 “등록(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개선명령 및 권고)”를 “(개선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각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제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를 “택배서비스사업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로 한다.

제45조제3호 중 “인증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등록 또는 인증 등”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을 경영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7.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2·제9호의3·제9호의4·제9호의5 및 제9호의6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각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7.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 제17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17조의6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미인증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협회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드론----- ----- ----- ----- ----- ----- ----- ----- ----- -----</p>

사업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

-----  
-----  
-----

4.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한---

5.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  
-----  
-----  
-----  
-----.

6.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생략)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 ② (생략)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7. (현행과 같음)

제9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조의2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  
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

<신 설>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신 설>

제1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등)

-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17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

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  
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3.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4. 제19조의4에 따른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확인

5.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  
확인

6. 제19조의6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 이수 확인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

<신 설>

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17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  
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록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  
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  
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3.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

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  
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  
우

⑥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

제19조(등록의 취소 및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종사의 제한) ① (생략)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

5.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종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  
-----  
-----  
-----  
-----

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  
-----  
-----  
-----  
-----.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  
-----  
-----  
-----  
-----  
-----  
-----  
-----  
-----  
-----.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제1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④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 -----  
-----  
-----.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  
-----  
-----  
-----  
-----  
-----  
-----  
-----  
-----.





<신 설>

호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2. 제19조의4에 따른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3.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

4. 제19조의6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 이수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8(개인정보의 최소처리 및 보안조치)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9조의7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본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조치·열람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  
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생활  
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사업자-----  
-----  
-----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사업자-----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  
-----  
-----  
-----  
-----  
-----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생략)

제4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략)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청문) -----  
-----  
-----.

1. 2. (현행과 같음)

3. -----등록의 취소 및 정지

4. (현행과 같음)

제47조(수수료) ① -----  
등록 등-----  
----- . ----- 제46조제3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제46조제3항-----  
-----  
-----  
-----.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8.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

제4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7.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 제17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





<p><u>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u>  <u>자 또는 영업점</u>  10. ~ 15. (생략)  ② (생략)</p>	<p><u>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10.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